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7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3
2. 공원계획 타당성검토 기준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추가	8
※ 참고자료	12
1.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12
2. 국립공원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추진현황	13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0일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

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확실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
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0년, 예외적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원 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일괄하여 단축하고, 타당성 검토의 기준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생략)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관리청은 <u>10년마다</u>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u>다만,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u>	② ----- <u>5년마다</u> ----- ----- ----- ----- ----- - <u><단서 삭제></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 등의 지침이 되는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¹⁾,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군수 등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대한 계획인 “공원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되,²⁾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3)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법정 계획의 종류 및 내용]

구분	정의	내용	수립주체(주기)
공원 기본 계획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 (10년)
공원 계획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공원구역계획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타당성 검토 -국립공원 : 환경부장관 (10년) -도립공원 : 시·도지사 (10년/5년) -군립공원 : 군수(10년/5년)
공원별 보전· 관리 계획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	-동·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탐방자의 안전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립공원 : 환경부장관 (10년/5년) -도립공원 : 시·도지사 (10년/5년) -군립공원 : 군수(10년/5년)

※ 출처: 환경부

[공원계획의 세부 내용 및 현황]

- **공원구역계획** : 자연공원 지정기준과 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자연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
 ※ 국립공원 23개소(6,888km²), 도립공원 30개소(1,027km²), 군립공원 28개소(253km²)
- **공원용도지구계획** : 생물다양성, 경관, 토지이용 등에 따른 공원구역의 용도를 달리하여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 용도지구 구분 : 공원자연보존지구(1,610km², 23.4%), 공원자연환경지구(5,241km², 76.1%), 공원마을지구(14km², 0.2%), 공원문화유산지구(23km², 0.3%) (국립공원 기준, '24.12.)
- **공원시설계획** :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계획
 ※ **공원시설** : 공공시설(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등), 보호 및 안전시설(사방·호안 등), 휴양 및 편의시설(야영장, 전망대 등), 문화시설(자연학습장 등), 교통·운수시설(도로, 탐방로, 주차장 등),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 출처: 환경부

한편, 현행 제도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로 구분된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일정한 행위제한을 두도록 하여⁴⁾ 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고 경제·사회적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⁵⁾.

4) <참고자료 1.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이에 개정안은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려는 것으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함에 있어서 제반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과 실시, 공원계획 변경안 마련, 주민·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 검토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⁶⁾,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시 공원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원 보전·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연평균 33억 6,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등⁷⁾ 직접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 외에 공원구역 해제·축소 관련 지역갈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⁹⁾.

5) 「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3. 현실성 없는 자연공원법', (강원도민일보, '08.3.)

6) 국립공원의 경우 '97년 이후 총 3차에 걸쳐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이 실시되었으며, 제1차 변경은 '97~03년, 제2차 변경은 '08~11년, 제3차변경은 '18~23년에 걸쳐 진행됨.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 국립공원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추진현황> 참고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2,134	4,934	6,534	1,734	1,482	16,818	3,364
	국비	400	3,200	4,800	-	-	8,400	1,680
	지방비	1,734	1,734	1,734	1,734	1,482	8,418	1,684

주: 1. 국비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2. 지방비는 도립·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3.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지난 10년간(2016~2025년)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타당성 검토방법 및 검토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이외에 환경부는 조직·예산 등 상시 검토체계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제시하였음.

2. 공원계획의 타당성검토 기준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추가

개정안은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추가하려는 내용임(안 제15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u>환경영향</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 ----- <u>환경영향,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원계획 타당성의 검토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관련 기준으로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등을 규정하고 있음.

9)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전국적으로 3,350건 해제 민원이 제기됨.

[현행법령에 따른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③ <u>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관리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하천 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구 분	기 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 출처: 환경부

다만, 타당성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수립된 공원계획에 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체적 사정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 현황]

(24.12.31.기준)

구 분	면적(육상부) (km ²)	사유지(km ²)	사찰지(km ²)	사유지 비율
국립공원(23개소)	4,106	966	304	24%
도립공원(30개소)	601	318	107	53%
군립공원(28개소)	250	112	31	45%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고려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토지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다만, 현행법령에 따라 제시된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기준들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 공원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원 구역 해제는 사유지 위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10) 유사입법례로는 주민 등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고려하여 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주변의 토지소유현황 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의 경우 공원계획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문 의 처

02)6788-5541

11)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고자료

1.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용도지구	주요 허용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 (22.7%)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 학술연구, 자연보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 ○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및 공원사업 ○ 군사시설·통신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행정기관장 요청) ○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복원, 불사 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 ○ 기존 종교단체의 시설물의 개축·재축, 고증절차를 거친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 복원 ○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방사업 ○ 임산물(고로쇠 수액) 채취행위(보존지구 신규 지정 지역 중 자발적 협약 시)
공원자연환경지구 (76.3%)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존지구 허용 행위 ○ 공원시설 설치 및 공원사업 ○ 농지 또는 초지 조성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창고 등) ○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 행위 및 시설 설치 ○ 임도의 설치,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 ○ 기존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이축 ○ 사방·호안·방화·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 군사훈련 및 농로 등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시설 ○ 허가받은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의 지역에 물건 적치 및 가설 건축물 설치 ○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 ○ 한시적(4개월) 탐방객 편의시설(해안 및 섬지역)
공원마을지구 (0.6%)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지구 허용 행위 ○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 및 시설 설치 ○ 가내공업
공원문화유산지구 (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 자연환경지구 허용 행위 ○ 불사시설 신축·증축·개축·재축 ○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

※출처 : 환경부

2. 국립공원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추진현황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타 당 성 조 사	기 간	'97.8.~'03.8.	'08.3.~'11.1	'18.4.~'23.8.
	추 진 경 과	• ('97.8.~'00.12) 공원구역 조정기준 작성 및 공원별 타당성 조사 • ('00.7.~8.) 주민 의견수렴 • ('01.2.) 공원별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안 마련 • ('01.3.~'01.12.) 관계기관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02.1.~'03.8.) 관계부처 후속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 ('03.8.)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 ('08.3.~'09.1.)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 ('09.1.~'10.5.) 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조정안 마련 • ('10.5.) 주민공청회 개최 • ('10.7.~'10.12.) 관계기관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11.1.)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 ('18.4.~'19.2.)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 ('19.3.~'20.8.) 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조정안 마련 • ('20.9.~'21.1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21.2.~'21.11.) 지자체 의견수렴 • ('21.9.~'23.4.) 관계부처 협의 • ('21.10.~'23.4.)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 • ('23.8.)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방 법	① 공원자원성평가 - 자원성(자연경관, 자연생태계, 문화경관), 관리성(지형보존, 토지소유 및 이용) ② 지역별 타당성 평가 - 관리효율, 지역발전, 주민 편의성 등 ③ 구역조정 영향성 평가 - 자연환경, 공원관리	① 생태기반평가 -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 5개 항목 ② 자원성평가 - 자원성, 관리성 ③ 타당성평가 - 자연환경, 공원관리	① 생태기반평가 - 4대 분야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지질 및 문화자원, 19개 항목(멸종 위기생물 등) ② 적합성평가 - 용도지구: 접근성·이용성 등 - 편입 : 자원성, 관리성 - 해제: 자연환경, 공원관리
변경 결과		• 최초 6,447km² • 편입 185km² • 해제 53km² - 주민 11만명→8.8만명 (2.2만명 감소, △20%) • 최종 6,579km² (+2%)	• 최초 6,579km² • 편입 130km² • 해제 206km² - 주민 5.8만명→5천명 (5.3만명 감소, △91%) • 구적오차 78km² • 최종 6,581km²	• 최초 6,726.3km² • 편입 72.2km² • 해제 36.2km² - 주민 49백명→43백명 (6백명 감소, △12%) • 최종 6,762.3km²

※출처 : 환경부